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85
----------	-------

발의연월일 : 2025. 10. 23.

발 의 자 : 안도결 · 임호선 · 조인철
전용기 · 박홍배 · 박민규
김우영 · 정진욱 · 정준호
복기왕 · 손명수 · 민병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간병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분산하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간병보험 가입을 통해 간병비 부담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간병보험료 지급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5(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9조의15(간병보험료에 대한</u> <u>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u> <u>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u> <u>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u> <u>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u> <u>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u> <u>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u> <u>따라 「소득세법」 제50조에</u> <u>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u> <u>자로 하는 간병보험료로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를</u> <u>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u> <u>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u> <u>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u> <u>에서 공제한다. 다만, 보험료의</u> <u>합계액이 연 50만원을 초과하</u> <u>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u> <u>없는 것으로 한다.</u>